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2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1일

발 의 자 : 이광성, 김기덕, 김광수, 김정환,
김제리, 송정빈, 오현정, 최정순,
장상기, 문장길, 이광호 의원(11명)

1. 제안이유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 제40조제1항에서는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를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바, 급수설비 관리 책임에 대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함(안 제4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u>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u></p> <p>② ~ ⑥ (생략)</p>	<p>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u>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서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계량기를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책임지도록 규정(조례 제40조제1항)함에 따라 상위법령을 위반한 위법 소지가 있어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서울시가 책임지도록 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서울시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를 관리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계량기) 규모 등의 자료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조례안은 제40조 제1항에서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서울시가 책임지도록 하여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동안 수도사용자가 관리하여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계량기)의 현황과 파손 등에 관하여 파악된 자료가 없어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33
	e-mail : ehdus0@seoul.go.kr